

#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1. 3. 10.
기획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 안건명: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김귀화 의원 등 6명(박종길, 서민우, 안영란, 조복희, 이신자)
- 발의일자: 2021. 2. 22.
- 회부일자: 2021. 2. 25.
- 상정 및 의결: 제27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3. 10.)

### 2. 제안이유

-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및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인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및 정액 지급 규정 등을 마련하여 본 제도를 효용성 있게 운영되게 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목적 및 장학생의 자격(안 제1조 ~ 제2조)
- 추천 및 선발(안 제3조 ~ 제4조)
- 장학생 정원(안 제5조)
- 장학금(안 제6조)
- 장학금의 지급시기(안 제7조)
- 지급정지(안 제8조)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0조의2, 「고등교육법」 제2조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대상
- 입법예고(2021. 2. 17. ~ 2021. 3. 5.)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및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장학금 지급액을 명확히 하여 통장의 사기진작과 자녀 학업증진에 기여함에 따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본 조례안 중 장학금 정액의 적정성, 타 장학금 수령사실 확인 어려움으로 중복지급 제한 규정의 실효성 여부 등을 살펴 볼 필요성이 있으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과 관련하여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고등학생을 제외하자는 집행부 수정의견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이와 관련하여,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관련하여 최근(2020. 9월이후) 개정된 25개 지방자치단체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살펴보면, 장학금 지급대상에 고등학생이 포함된 조례는 21건이며 제외된 조례는 4건임.

## 6. 질의 · 답변 및 토론 요지

- 통장자녀의 장학금 지급 범위 확대는 통장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개정하여야 할 조례임.

- 장학금 지급 대상 선정기준 및 금액 측정에 대한 별도의 심사기준 마련 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공평하고 중복되지 않게 수혜가 가능하도록 해 주기 바람.
-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여부 및 대학생 장학금 지급에 따른 여론 수렴과 지급 통계자료 등을 확보하여 보완해 나가야 할 점이 있음.
-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교육청 고시에 따른 공납금을 참고하게 되어 있음.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있는 학생의 범위를 넓히는데 있으며, 꼭 수업료가 아니더라도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학금 지급을 위해 고등학생에게도 그 범위를 열어놓는 의미가 있으므로 고등학생을 수혜자의 범위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의견이 모아짐
- 기존 조례가 운영 중에 있으므로 ‘부칙’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

## 7. 심사결과: 수정가결

## 8. 첨부서류: 위원회 수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를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